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5

제출년월일 : 2015. 9. 30.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 1. 제정이유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다.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규정 (안 제7조)

라. 교통안전 협력체계 및 교통지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법」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8조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다. 기 타

-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9. 2. ~ 2015.9.22.)결과 제출된 의견없 음
-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어린이집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실행 시 제반 비용
-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용희((☎02-330-1852)

## 관계 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 교통안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 6.(생략)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

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3) 월별·요일별·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 ② (생략)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9호, 2015.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